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2025. 4. 30.(수)

제425회 임시회

제 2 차 본 회의

심 사 보 고 서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충청북도의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09
----------	-----

2025. 4. 30.(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충청북도지사

나.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4월 22일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투자유치국장 문석구)

가. 제안이유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는 충북 북부권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 202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아 2025년 보상금 지급 등 사업 착수를 계획 중임.
-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개발사업 시행협약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명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 채권자 :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 예산 외 의무부담 내용
 - 사업준공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의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 50%에 대한 3개월 이내 매입계약(미분양 연구시설용지 100%매입)
 - 최대매입금액 2,486억원, 충청북도와 충주시 각 50%부담
 - ※도 최대 부담금액 1,243억원
 - 5년간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재정지원금 부담(2027년~2031년)
 - 재정지원금 365억원, 충청북도와 충주시 각 50%부담
 - ※도 부담금액 182.5억원(연 36.5억 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제출배경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개발사업 조기 착공을 위해 준공 3년 이후 미분양 용지 매입계약 및 재정지원금 지원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해 행정절차를 준수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검토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동의안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준공 3년 이후 미분양 용지 매입에 관한 사항은, 시행협약서 체결 시점에는 미분양용지의 발생 여부와 비율, 그에 따른 인수비용 등 의무부담의 구체적내용과 금액을 예상할 수 없으나 향후 예산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방재정의 부담과 비재정적 의무부담을 포괄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함.
- 충청북도지사가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의무부담행위 중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협약의 경우 타 국가산단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협약 현황과 비교할 때 매입 시기와 매입협약 미분양 용지 비율이 충청북도에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2010년 이후 충주 내 산단의 분양 추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예상되는 재정부담 역시 도에서 산정한 최대 부담금액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재정지원금은 주변 산업단지에 비해 조성원가가 높은 충주 국가산단의 경쟁력 확보 및 분양성 제고를 위해 재정지원금 부담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총사업비가 2022년 기본협약 당시보다 20%이상 증가¹⁰⁾하였음에도 기존 협의된 금액에서 증액없이 지원금액을 유지하였으며, 지방비 지원 비율 또한 다른 제19대 정부(2017.5.~2022.5.) 국가산단 후보지와 비교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10) 시행협약('22.5.예정) 총사업비 8,171억 원으로 기본협약('22.5.) 총사업비 6,767억 원 대비 20.7%증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동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충주 바이오 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산업 추진을 위한 도의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준공 후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및 재정지원금 지원 등은 기존 충주 내 산업단지의 분양 추이와 다른 국가산단 후보지의 지방비 지원율,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이는 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성 제고와 개발사업의 조기착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향후 산업단지 준공 이후 산업단지가 조기에 분양 완료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분양 이후에도 국가산업단지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의안번호	제909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5년 4월 11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의안 번호	909
----------	-----

제출연월일 : 2025년 4월 1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는 충북 북부권 최초의 국가산업 단지로 2023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받아 2025년 보상금 지급 등 사업착수를 계획하고 있음
- 본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원가 인가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조기 착공을 위한 시행협약과 관련된 도의 의무부담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명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 채권자 :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 의무부담 내용
 - 1) 사업준공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의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50%에 대하여 3개월 이내 매입계약
 - 최대 매입금액 2,486억원, 충청북도와 충주시 각각 50% 부담
 - 도 최대 부담금액 1,243억원
 - 2) 조성원가 인가를 위한 재정지원금 365억원 부담
 - 재정지원금 365억원, 충청북도와 충주시 각각 50% 부담
 - 도 부담금액 182.5억원, 지원시기 2027년 ~ 2031년(5년간)

3. 추진상황 및 계획

- 국토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 2018년 8월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2020년 9월
-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 2023년 10월
- 지장물 조사 등 기본조사용역 착수 : 2024년 4월
- 시행협약 관련 도 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 : 2025년 1월
- 의무부담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통과 : 2025년 4월
- 보상계획 공고 : 2025년 4월
- 시행협약 체결 : 2025년 5월

4. 관계법령 발취 : 붙임

- 지방자치법 제47조
-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

5. 참고자료

-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서(안) : 붙임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도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미리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3.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의 경우
4. 도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업단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서(안)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서

2025. 00.



충청북도



충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본 사업”이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일원의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말한다.
- ② “조성비”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이라 한다) 제26조의6(조성비의 산정)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 ③ “조성공사”란 본 사업지구의 부지조성공사 및 기타 지구 내 부대시설 공사를 말한다.
- ④ “기반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도로, 용수공급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 ⑤ “조성원가”란 “통합지침” 제26조의3(단위면적당 조성원가 등의 산정)에서 규정하는 조성원가를 말한다.
- ⑥ “공사준공”이란 “LH”가 시행한 조성공사의 준공검사 완료일을 말하며, “부분 공사준공”이란 일부구역에 한하여 실시한 부분 준공검사 완료일을 말한다.
- ⑦ “사업준공”이란 “산입법” 제37조 및 “통합지침” 제30조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공고일을 말한다.
- ⑧ “산업시설용지”란 “통합지침”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조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등을 말한다.
- ⑨ “재정지원금”이란 산입법 제46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별첨 1에 따라 “도”, “시”가 “LH”에 지원하는 공공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본 사업내용은 산업단지계획의 승인(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597호) 내용을 따른다. 단, 산업단지계획이 변경되면 변경승인 내용을 따른다

1. 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 본리 일원
2. 면적 : 2,241,027m²
3. 사업기간 : 2023년 ~ 2029년
4. 유치업종 : 바이오헬스(의료·의약품, 전자부품, 식료품 등)

제4조(사업비 분담 및 지원) ① “LH”는 사업지구 내 용지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및 제2조제3항에 의한 조성공사비 등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 비용을 분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 인하를 위하여 “도”와 “시”는 별첨1의 ‘기반시설 설치 등의 분담내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며,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성원가 저감을 위하여 “시”는 본 사업에 따른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④ “도”와 “시”는 조성원가 인하를 위하여 별첨 1의 지자체 재정지원금 365억 원을 “LH”에 지원하며, 지원방식은 2027년부터 5년에 걸쳐 균등분할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LH”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⑤ “도”와 “시”가 제4항에서 정한 재정지원금의 지원기한을 경과한 경우 지연 손해금은 지연일수에 이자율(지급일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을 적용 산정하여 가산 지원한다. 다만, “도”와 “시”는 “도”와 “시”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 시기 조정을 “LH”에 요청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지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 “LH”는 해당연도 예산집행 결과 사업비의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없이 다음 연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⑦ “도”와 “시”는 사업준공 후 재정지원금 집행내역 확인을 위하여 “LH”에 공사 준공내역 등 사업비 투입에 관한 관계서류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성원가산정심의회 참석요청 및 조성원가 산정의 근거자료 요구 등 조

성원가 확인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LH”는 “도”와 “시”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⑧ “LH”는 산업법 시행령 제40조제8항에 따른 매각수익의 사용범위를 “도”·“시”와 협의하여 산업법 시행령 제40조제7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으로 정하고,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금 정산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하에서 “도”·“시”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⑨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성원가 저감을 위하여 “시”는 본 사업지구 내 분묘이장 및 축사이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⑩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은 “도”와 “시”가 별첨1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고 “시”가 설치(설계 및 건설시행)한다.

⑪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에 따라 부지내 설치하는 제10항의 기반시설의 토지는 “LH”에서 무상제공하며, 산업단지내 기반시설용지의 변경은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의 분담) ① “도”와 “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조제2항의 기반시설 중 별첨1의 ‘기반시설 설치 등의 분담내역’에 따라 “시”가 설치하기로 정한 시설의 사업비 확보, 설치, 유지관리 및 이에 따른 제반업무
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간소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승인(변경)을 위한 행정지원 및 협조
3. 사업준공 및 본 협약 제9조에 의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이후의 공공시설 관리업무
4.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업무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
5. 본 사업지구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수질, 대기질 등 환경관리

② “LH”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1. “산업법” 및 “간소화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변경)을 위한 인·허가 관련 업무
2.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용역수행, 공사발주 업무
3. 사업지구 내에서의 토지취득, 보상 및 조성공사 업무
4. 개발한 토지의 분양에 따른 제반업무

5.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업무 및 민원사항 해결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도”, “시”, “LH”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공동으로 수행한다.

1. 입주업체 선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기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대한 행위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도”, “시”, “LH”는 제2조제2항에 따라 별첨1의 ‘기반시설 설치 등의 분담내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추진하며, 해당 시설은 산업단지 입주예정자의 토지 사용시기 전까지 설치·운용토록 상호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업체 유치 및 지원 등) ① “도”, “시”, “LH”는 산업시설용지 등의 분양 촉진을 위하여 대기업 및 대규모 공장 등 분양선도업체 발굴·유치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② “도”, “시”, “LH”는 본 사업 성공적 분양을 위하여 유치업종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을 통해 다양한 업종과 업체가 입지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도”와 “시”는 입주업체의 취득세, 지방세 등의 감면과 투자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④ “도”와 “시”는 본 사업의 입주수요 확보를 위해 관내 동종의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를 지양하고 기존 개별공장의 신설·이전을 촉진하여 본 사업지구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

⑤ “시”는 사업준공시 지적공부정리, 입주업체들의 공장 건축허가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8조(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분양) ①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조건, 분양가격의 결정 등은 “산업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LH”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전 협의한다.

②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 높아 공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도”, “시”, “LH”는 분양가격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업체 유치 및 재정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산업시설용지가 미분양 될 경우, “도”와 “시”는 사업준공 후 3년이 경과 된 시점에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50%(미분양 연구시설용지의 경우 100%)에 대해 “LH”와 매입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매입에 따른 세부사항은 제1항에 의하며, 매입가격은 조성원가(단,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가격)로 하고, 매입계약 체결시기는 사업준공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체결한다.

제9조(공공시설의 인계·인수) ① “LH”가 조성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LH”는 공사준공 후 “시”에 합동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의 점검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LH”와 합동으로 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LH”는 합동점검 결과 통보된 지적사항을 조치 후 “시”에 조치결과 및 준공도서를 제출하고 상호간에 인수인계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시설물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단, “LH”는 합동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전 “시”와 합동으로 조치결과 반영여부를 확인토록 한다. 준공 전 공용개시 된 공공시설은 공용개시된 때 인계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LH”가 구역을 나누어 단계별로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성이 완료된 일부 구역에 한하여 “산입법” 제37조 및 “통합지침” 제30조 규정에 따라 부분준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는 부분준공 인가 및 부분준공에 따른 공공시설물 인계·인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④ 제1항 공공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는 “산입법”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하자보수 및 관리비용) ① “LH”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 시 당해 시설물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시”에 이관하여 “시”가 하자담보추급권(하자담보책임기간 내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의 하자관리는 “시”가 담당한다. 단, 시설물 시험가동·합동점검 시 지적

된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LH”의 책임하에 보수를 완료하고, “시”는 이를 확인한다.

② 인계·인수된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에 대하여는 “시”의 책임하에 보수한다.

제11조(기타사항) ① “LH”는 사업시행 중 매장유산의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발굴된 매장유산의 현지보존이 결정될 경우 보존조치에 필요한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녹지 또는 공원 등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와 “시”는 보존조치에 필요한 토지의 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을 본 사업 내에 계획된 녹지 및 공원용지에서 산업용지 등 타 용지로 조정·변경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② “도”, “시”, “LH”는 사업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가관리에 상호 협조하고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협약의 변경) ① 본 협약 체결 이후에 “도”, “시”, “LH”는 일방적으로 본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과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사업환경 변화 등 제반사정의 변경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도”, “시”, “LH”가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내용은 공식적인 문서로 확정하여야 하며, 문서로 확정된 내용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본 협약 내용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의 변경에 의한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본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한다.

제13조(협약해제 및 해지) ① “도”, “시”, “LH”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협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도”, “시”, “LH”가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해 본 협약이 해제 및 해지될 경우, 협약당사자 중 해제 및 해지에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지고 투입된 매몰비용(회수할 수 없는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제14조(해석 등) 본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경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 “시”, “LH”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단, 분쟁에 의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 법원은 본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 법원으로 한다.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3부를 “도”, “시”, “LH”가 직인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하며, 본 협약의 효력은 “도”, “시”, “LH”가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된다.

2025년 00월 00일



충 청 북 도 지 사 (인)



충 주 시 장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인)
위 대리인 충북지역본부장

별첨 1

기반시설 설치 등의 분담내역

구분	사업량		시행주체 (재원부담)	추정 사업비 (억원)	비고
계				1,577	
도로시설	- 진입도로	① 확장 L=1.21km, B=31.0m (4차로→6차로) ② 교량 L=0.45km, B=19.5m(1개소)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국비)	253	
용수 공급시설	- 지구 내 인입관로(D500mm, L=1.5km) - 배수지(V=6,400m ³ /일) - 가압장(Q=18,000m ³ /일)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08	
	- 지구 외 인입관로(D500mm, L=0.5km)		한국수자원공사 (국비 등)	5	
공공폐수 처리시설	- 산업시설 폐수처리시설 설치(Q=7,000m ³ /일)		충주시 (국비 276억 충주시 118억)	394	국비 70% 지방비 30%
공공하수 처리시설	- 생활 하수처리시설(Q=4,000m ³ /일)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면제		충주시 (충주시)	250	
완충저류 시설	- 완충저류시설(Q=9,000m ³ /일)		충주시 (국비 141억 충주시 61억)	202	국비 70% 지방비 30%
지자체 재정지원	-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공공지원금		충정북도 충주시 (지방비)	365	충북도 50% 충주시 50%

※ 상기 사업비는 추정사업비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름